

# 육아정책 소식

## 어린이집 급식관리기준 및 차량안전기준 강화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식 관리기준 및 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보다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고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개정 영유아보육법(‘11. 8. 4. 공포)이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공립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마련하였다.

입법 예고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법 예고안 주요 내용〉

#### ①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물 제공금지 등 급식 안전기준 강화

앞으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물을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이미 제공된 음식을 재사용할 수 없고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기준 위반시에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② 어린이집 차량 이용 영유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영유아가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등·퇴원 일지를 작성하여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안전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③ 국공립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지자체 등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 위탁체를 심사하여 선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신청자격·심사기준 등의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유아교육 선진화 위한 제도 도입 근거 마련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동 법률안 개정은 2009년 12월 8일 발표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아교육법 주요 개정 내용〉

- ①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 참여 통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하였다.
- ② 유아학비 지원이 확정된 유아의 자격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학부모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③ 유아의 보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예산의 누수를 방지하였다.
- ④ 유치원이 아니면서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자의 제재 근거를 두어, 유아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하였다.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지자체 참여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연중 운영하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에 관내 학교와 함께 참여할 기초지자체 공모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모한 116개 지자체가 지역내 돌봄수요를 고려하여 교육청(학교)과 적극 협력한 것으로 판단되어 응모한 모든 지자체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12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11년 운영교실 1,000교실에 이번 공모로 700교실을 추가하여 모두 1,700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재원 확보 추이를 고려하여 추가로 공모할 계획이다. 선정된 돌봄교실은 인건비 및 저소득층 지원비, 운영비로 교실당 5,000만원(교과부 50%, 지자체 25%, 시도교육청 25%)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연중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운영함으로써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의 보호·교육을 위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주5일수업제 도입으로 토요 돌봄수요까지 흡수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여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 등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